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형성 검사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소와 돼지에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는 백신접종후 2주가 경과되면 100% 항체가 형성되고 돼지는 2주 경과후 약 60%, 3주 경과후 약 80%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차 백신접종후 1주일이 경과후 조사해 본 바, 100%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분석중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 전과 같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하였다.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하였다.

안내자료 Ⅱ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증체 등과 사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험 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육은 2℃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축장에서 감염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사료공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 하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 한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소사료의 경우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하고 돼지사료의 경우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기타사료는 해당 시·도 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하고,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축산분뇨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이들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의 저장조(500톤 규모)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 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